

# 『제조물책임보험』 개관

## 위험관리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이 PL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PL보험시장 형성의 기대에 따른 시장 개발 및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제조물책임보험』의 주요사항을 살펴본다.

### 1. PL법과 PL보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조물책임)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완성자를 비롯하여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제조물의 판매 유통에 관련된 공급자 모두는 상품의 안전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를 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하여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가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PL보험의 주요 사항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는 크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Third Party Liability)와 기업휴지에 따른

자체손실로 대별된다.

제조물책임보험(Products Liability Insurance)은 이중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제조물위험(Product Hazards) 또는 완성품위험(Completed Operations Hazards)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신체상 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가. 가입대상 제조물의 범위

-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 정의된 제조물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2) 제조물책임법 적용에서 제외된 생산물
  - 미가공 농산물(임·축·수산물 포함), 완성작업(승강기·광고판 설치, 유지, 보수작업)

#### 나. PL보험 가입대상(피보험자의 범위)

PL보험 가입대상자는 제조업자(완성제조업자, 원료·부품제조업자, OEM 및 PB부착제조업자), 유통업자(수입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도·소매판매업자, 대여업자), 완성업자(설치·해체업자), 점검업자, 수리·보수업자) 기타 상표권자를 포함한다.

상품에 따라 가입대상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다. PL보험 약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약관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으며 이들 약관은 사고 담보기

**위험관리 「제조물책임보험」 개관**

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과 배상청구기준(Claim- Made Basis) 약관으로

(2) 보상한도  
PL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PL 보험가입 대상>**

구 분	대 상
일반적인 경우	실질제조업자→판매업자→소비자
수입제품의 경우	실질제조업자(외국)→수입업자→판매업자→소비자
OEM <sup>1)</sup> 의 경우	실질제조업자(공급원)→OEM제조업자(공급원)→판매업자→소비자
PB <sup>2)</sup> 의 경우	실질제조업자→브랜드표시 유통업자→소비자
실질적 제조업자의 경우	실질제조업자(제조원)→발매원→판매업자→소비자

※ 음영 표시된 자가 주 가입대상임.

분류된다. 손해사고기준은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며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약관은 국내에 판매되는 제조물(제품)에 적용된다. 배상청구기준은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한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뤄지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약관은 해의수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약관의 주요내용**

**(1)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PL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소송시 확정된 법정판결금 또는 소송전 합의금을 말한다.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공탁보증보험료 및 피보험자의 협력비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손해에 따른 손실비용의 합계가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수, 배상청구 또는 소송건수, 개인 또는 단체를 불문하고 1회의 배상청구(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Deductible)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한도액(L.O.L; Limit of Liability)내에서 보상한다.

또한 모든 배상청구에 대한 보상총액은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을 한도로 한다. 보상한도액 설정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소송의 증가, 국민소득 증가 및 패소시 유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액의 고액화, 기업의 매출액 규모 및 제품의 위험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공제금액(Deductible)은 PL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사고의 발생빈도와 크기, 보험가입자의 재정(자체부담)능력 및 보험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즉 약관상 주요 면책사유로는 •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Intentional Act) •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가중 부담하는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 •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Worker's Compensation) • 제품 또는 일부에 생긴 제품자체의 손해(Damage to the Insured's Product) • 환경오염 배상책임(Environmental Liability) • 리콜비용(Recall) • 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 • 전쟁, 천재지변(War) • 원자력핵물질, 방사능위험(Nuclear Liability)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의 타인

공제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중에서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국문약관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공제금액을 적용

<PL 보험약관>

구 분	국문 약관	영문 약관
적용대상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조물	해외수출 제조물 및 외국법인
담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고 기준</li> <li>• 배상청구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사고 기준</li> <li>• 배상청구 기준</li> </ul>
보통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물배상책임 보험 보통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li> <li>• Commercial General Liability</li> <li>• Package Policy(Section IV)</li> <li>• Tailor-Made Policy</li> </ul>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업자 특별약관</li> <li>• 판매인 특별약관</li> <li>• 인증기관 마크계약 특별약관</li> <li>• 인격침해담보 특별약관</li> <li>•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li> <li>• 대위권포기 특별약관</li> <li>• 효능불발취부담보 특별약관</li> <li>• 정보기술 특별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ditional Insured(Vendors) Clause</li> <li>•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li> <li>• Premium Adjustment Clause</li> <li>• Premium/Claim Payment Clause</li> <li>•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li> <li>• Explosion, Collapse and Underground Property Damage Hazard Exclusion Clause(Specified Operations)</li> </ul>

의 재물손해(Care, Custody or Control) •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 물의 사용손실(Impaired Property) 등이다.

하나 영문약관에서는 손해배상금과 보상한도액에 다같이 적용한다.

마. 기타 사항

(1)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PL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이 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이다. 국문약관의 보상한도액은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 각각에 대해 설정하는 방법과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단일보상한도액(CGL: Combined Single Limit)을 설정하는 방법 중 택일하며 영문약관은 CGL로만 설정할 수 있고 양자 모두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한도액(Aggregate Limit)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2) 공제금액(Deductible)

(3) 손해사고증권(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made Basis)

PL보험은 손해사고증권과 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대별된다. 손해사고기준증권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며 배상청구기준증권에서는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부터 보험기간 말까지의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 보상한다.

(4) 소급일자(Retroactive Date)

배상청구기준 증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사고일자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이전에 발생된 손해사고기준 증권과의 담보에 관한 시간적 범위

의 조정, 보험자의 위험인수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 의하여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는 사고가 보험기간 이전의 특정일자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데 이를 소급일자라고 한다. 즉 배상청구기준 증권에서는 소급일자- 보험기간 말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5)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Territory & Jurisdiction)

담보지역은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이며, 관할법원이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판결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보통 사고발생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지역과 동일한 관할법원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제조물이 동산인 경우 증권상 담보지역으로 명시된 지역에서 판매되어 사용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담보지역에서 판매된 후 소비자에 의해 증권상에 명시된 담보지역 외로 옮겨져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동사고 제조물이 증권상에 명시된 담보지역에서 제조 또는 판매된 것이 입증되면 보험에서 담보한다.

바. 보험료의 산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과 보험료산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하는데 보험조건과 담보대상의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이다.

- 보험조건: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
- 담보대상: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제조물의 종류 및 연간 매출액

(2) 요율

보험조건 및 높은 보상한도액과 낮은 공제금액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3) 담보지역과 관할법원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이 포함되면 여타지역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진

다. 특히 미주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수배정도로 보험료가 높다.

(4) 담보제조물

담보하는 제조물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생긴다. 즉 자동차 관련제품, 의약품 등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5) 예상매출액 및 확정매출액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기간 중 총예상매출액(Estimated Annual Turnover)에 보험요율(Adjustable Rate: 정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보험료가 연간예상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출되므로 최초 보험가입시점의 예상매출액(Estimated Turnover)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정산특별약관(Premium Adjustment Clause)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6) 보험요율 적용

- 협정요율: 사전에 인가된 요율로서 현재 요율서에 기재된 일부 제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개별요율: 대부분의 국내 제조물 및 해외 제조물에 대해 적용하며 현재는 재보험자가 제시한 요율을 사용한다.

사.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절차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절차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준비사항과 보험회사(보험자)가 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험계약자는 • 제조물에 대한 위험분석 • 보험료 산출자로 제공 • 보험회사에 보험료 견적요청 • 보험료 가입조건 결정 및 청약서 작성 • 보험료 납입 등이며

보험회사는 • 보험료 산출검토 • 보험료 산정, 보험료 안내, 보험료 납입확인 • 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급 등이다. ㉞

— 정리: 편집자